

보도자료

2011년 11월 23일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
- 가. 이용자보호과 박철순과장(2670) 나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과장(2770)
- 다.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과장(2430)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과장(2250)
- 라.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과장(2430)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과장(2250)
- 마. 통신경쟁정책과 이창희과장(2530)

[보고안건]

- 가.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과장(2430)

2011년 제64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기간통신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피심인 (주)온세텔레콤(이하 “온세”)과 SK브로드밴드(주)(이하 “SKB”)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별정통신사업자(이하 “전화정보사업자”)에게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성인인증 과정에 과금하고, 전화정보사업자의 정보이용안내 및 성인인증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
- 피심인 대명정보 등 15개사*가 서비스 제공 전에 정보이용 안내 절차를 생략하거나 또는 성인인증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심의한 결과,
- 금지행위 중지,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, 업무처리 절차개선, 이행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, 온세통신과 SKB에 대해 각각 3,992만원, 3013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

* (주)대명정보, (주)디앤에스네트웍, (주)리사, (주)미인네트웍스, (주)썸머네트웍스, (주)애플라이주, (주)에어플러스, 에스지네트웍스(주), (주)바른정보시스템, (주)스위티, (주)에스엠엔, (주)이앤에이솔루션, (주)폰친구, (주)비엠비, (주)타워정보통신

나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인 한국엡손(주)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,
 - 과징금 3,300만원 및 과태료 900만원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함

다. 2011년도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

- 2011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식회사 경인방송 등 5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,
 -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등의 조건과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방송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

【 재허가 조건 】

구분	부과 내용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,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 •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,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 •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
제주방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외이사 운영 등 경영투명성 보장 이행계획을 2011년 12월까지 제출하고 매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
광주영어 부산영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취자위원회 구성시 외국인 비율을 30% 이상 되도록 구성할 것 • 모든 방송프로그램(단, 외국인 대상 한국어서비스 프로그램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비영어 프로그램은 제외)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함.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

【 재허가 권고사항 】

구분	부과 내용
공통	·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준수할 것 ·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방송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·정기적인 청취자 청취행태 및 요구사항을 조사·분석하고, 청취자 불만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방송편성·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아리랑 광주영어 부산영어	·방송권역내 거주(체류) 외국인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생활정보방송을 제공하되,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 ·영어로 방송을 하는 방송사간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방송품질 향상과 자원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
광주영어 부산영어	·방송권역내 생활권이 공유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청취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
경인방송	·과도한 협찬운동을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
아리랑	·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활성화와 제주를 방문하거나 체류중인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

※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5년으로 하되, 제주FM라디오방송의 허가유효기간은 TV방송국과 통일을 위해 2년으로 함

-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음(전파법시행령 제36조제2항)

라. 2011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

- o 2011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단법인 관악 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한 결과,
 -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’의 편성을 금지하고, 현재 편성하고 있는 보도 유사 프로그램의 현황 및 개선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함

< 재허가 조건 >

- ①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’의 편성을 금지하고, 현재 편성하고 있는 보도 유사프로그램의 현황 및 개선 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※ (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) 국내외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·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
- ②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편성책임자와 광고책임자를 분리·운영하고, 분리·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- ③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모국어로 진행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방송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
- ④ (사)성서공동체에프엠은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위한 재정확보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- ⑤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,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
- ⑥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,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
- ⑦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

※ 재허가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은 1와트로 하고, 방송분야는 ‘음악, 문화, 정보제공(지역 관련 소식에 한정)’으로 하며,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함

마. (주)KT의 PCS사업(2G서비스) 폐지 승인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KT가 신청한 PCS사업(2G 서비스) 폐지 승인 신청(11.11.21.)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,
- 일정기간(14일) 동안 폐지 예정일(승인 14일 이후)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KT의 PCS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표결함

[보고안건]

가.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운용시간 규제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

- 현재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견청취 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함
- 규제완화에 따른 공익성 확보 및 시청자 보호방안 등에 대한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와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의결 추진